

"소방법 시행령 개정 골자"

80. 1. 4 소방법이 개정된데 이어 지난 4. 15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는대로 곧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령중 점검사항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벌포 18항 나 이하각 추가
2. 인명구조장구 비치규가(방열복, 산소호흡기 등)
3.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강화(작업장이 종전의 1,000평방미터에서 700평방미터)
4.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비상전원, 헤드간 거리등)
5. 변전실, 발전실, 보일러실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는 물분무용 3층소화설비 설치
6. 자동화제속로설비 완화
7. 불연성 및 증발성 액체 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물, 분말 소화설비로 용어 변경
8. 특수장소의 방염처리 완화(학교, 아파트, 여관등)
9.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중 지하층 또는 지하가로 연면적이 700m² 이상으로 변경 및 신설
10. 피난기구(18층이상 제외) 등으로 기타 자세한 것은 이미 각부처 송부한 시행령 개정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개정된 시행령중 특히 문제점이 될만한 사항은 "제30조(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1항 다음 각호에 ...(..13층 이상의 층 ...)...하여야 한다. 다만 12층 이상의 건축물로 옥상에 헬리콥터 이착륙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여기에서 옥상에 헬리포트 시설이 없는 17층 이하의 고층건축물에 피난기구(구조대, 완강기)를 설치하였을 때 과연 유사시에 이들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하겠다.